

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

공사실적액

[시행 2025. 1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101호, 2025. 1. 1., 일부개정]



고용노동부(장애인고용과), 044-202-7486
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106억 8,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.

부칙 <제2024-101호,2025.1.1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